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가단122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원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8,158,519원 및 그 중 7,555,444원에 대하여 202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22. 9. 15.부터 위 가.항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86,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8,158,519원 및 그 중 7,555,444원에 대하여 202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22. 9. 14.부터 위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86,84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7,953,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7,95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및 담보대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9. 12. 피고 C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리스목적물: 이 사건 자동차
- 리스기간: 60개월(2017. 9. 15.~2022. 9. 14.)
- 리스료: 월 1,320,800원

○ 리스료 지연손해금율: 연 24%

○ 자동차반환 지연손해금: 일 리스료 × 경과일수 × 가중치(200%)

○ 기타사항: 리스기간 만료시 피고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원고에게 2017. 10. 25.부터 2022. 3. 25.까지 매월 25일에 월 리스료 1,320,8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22. 4. 25.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22. 9. 25. 기준으로 피고 C가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등 합계는 8,158,519원(= 미지급 리스료 합계 7,555,444원 + 기타 발생비용 603,075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 구매, 리스계약 다시 체결 중에 선택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C는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미지급 리스료 등 합계 8,158,519원 및 그 중 7,555,444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21.부터 다투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86,846원[= 일 리스료 43,423원(= 월 리스료 1,320,800원 × 12개월 ÷ 365일, 원 미만 버림) ×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아들인 D가 피고 C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D에게 그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피고 C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가 피고 C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가져가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 2. 14. 남편인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액 27,953,230원[= 2022. 2. 14. 기준 채무액 29,893,600원(= 변제기 미도래 리스료 합계 9,245,600원 + 이 사건 자동차(리스차량)의 약정 잔존가 20,648,000원) - 피고 C가 2022. 3.부터 2022. 6.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1,940,37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7,95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C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고 가정불화가 생겨 피고들은 2022. 3.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1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는 2022. 2. 14.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22. 2. 14. 당시는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중이었고 그때까지 피고 C가 미납한 리스료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1989. 3. 16. 혼인하였고, 2022. 3. 21. 이혼하였다. 피고들의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9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 1,930,000원 상당의 2008년식 쉐라토 차량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합계 66,478,823원과 근저당권 채무 9,701,713원이 있었으며,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범위를 알 수 없다.

(다)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긴 하였지만, 그 증여계약 이후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액 합계 78,478,823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위 금액

상당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혼인기간, 피고들 모두 혼인기간 중에 경제활동을 한 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혼 전후의 피고들의 재산 상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설아

별지1

목록

등록번호	
차명	BMW 520d xDrive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B47D20A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호
최초등록일	2017. 9. 15. 끝.

별지2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133.97m^2 1층 133.97m^2 2층 133.97m^2 3층 114.57m^2 4층 81.27m^2 옥탑 16.90m^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면적 제2층 호 38.70m^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 250.1m^2

대지권의 종류 및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50.1 분의 18.21. 끝.

